

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시책일몰
제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3 월 12 일

여 수 시 장 2024.3.12


여수시 조례 제2036호
붙임 여수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1부

여수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대내외적 행정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, 예산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시책 등”이란 여수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·비예산의 시책, 제도(규칙, 훈령, 예규 등을 포함한다) 및 사업을 말한다.
2. “일몰”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·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「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라 본청 및 직속 기관, 사업소, 읍·면·동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.

제4조(일몰의 결정)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7조에 따라 결정된 시책 등을 폐지하여야 한다.

제5조(일몰의 권고) ① 여수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매년 여수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권고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 한다.

제6조(일몰대상 시책 등) 일몰여부를 심의·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.

1.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
2.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
3.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

단되는 시책

4.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

5.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

제7조(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·결정하기 위하여 여수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일몰여부의 심의·결정은 전년도 사업성과, 행정사무 감사 및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 1회 시행한다.

③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.

제8조(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) 시 본청 및 직속 기관, 사업소, 읍·면·동에 국한되고,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부서장 및 읍·면·동장이 결정하여 처리한다.

제9조(의견의 청취 등) 심의위원회는 시책 등에 대한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「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관리감독 등) ①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,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처리 후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의회에 회신하여야 한다.

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하여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